

※ 별첨 :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(제정) 및 형사소송법 개정 요지

사법개혁 법안 국회 심사 결과

2007. 4. 형사법제과

① 주요 입법 추진 경과

[1]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(배심제 도입)

- 2005. 12. 6. 국회 제출
- 2007. 4. 30.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수정 통과

[2] 형사소송법개정안

- 2006. 1. 6. ~ 7. 19.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 국회 제출
 - 2007. 4. 30.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수정 통과
- ※ 재정신청 확대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

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

대상 사건

- 합의부 사건 중 살인·강도·강간 등 강력범죄, 뇌물 등 주요 부패범죄,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죄 (안 제5조)
-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배심재판 선택권을 부여하여, 희망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 (안 제8조)
- 성폭력 사건 등 국민 참여가 부적절한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 (안 제9조)

배심원 선정 및 법정 구조

- 배심원 수는 법정형이 사형·무기징역인 사건은 9인, 그 외의 사건은 7인, 다만 자백 사건은 5인까지 가능 (안제 13조, 제14조)
- 검사와 피고인·변호인 좌석은 서로 마주보게 위치(對坐型)하고, 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·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, 증인석은 배심원단을 마주보고 위치하되, 피고인신문할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좌석 (안 제44조)

평결 및 양형의견 개선

- 사실인정은 배심원의 독자적 평의 및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되,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평결하고, 유죄 평결 후에는 양형의견 개선 가능 (안 제46조 제3항, 제4항)
-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관을 기속하지 아니함 (안 제46조 제5항)
-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평결 결과를 고지,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,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(안 제48조 제4항, 제 49조 제2항)

시행 시기

- 2008. 1. 1. 시행 (안 부칙 제1항)

③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

인신구속제도 개선

● 구인 후 유치제도(안 제71조의2)

- 법원이 인치받은 피고인을 교도소·구치소·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.
-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

● 긴급체포제도의 개선(안 제200조의4)

-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영장청구 기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으로 한정
-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 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는 제도 신설

● 구속 사유(안 제70조, 제201조)

- 범죄의 중대성, 재범의 위험성, 피해자·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구속사유 판단시 '고려'사항으로 규정

● 구속기간과 갱신(안 제92조)

- 원칙적으로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
- 다만, 상소심은 피고인·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, 상소이유 보충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3차 갱신 가능

● 보석 조건의 다양화(안 제99조)

- 현행 보증금 이외에 서약서 제출,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, 주거제한, 출석보증서 제출, 출국금지, 피해 공탁 또는 담보제공, 보증금 납입, 기타 조건 등 다양한 보석 조건 도입

수사절차의 투명화·피의자 권리보호

● 구속전 피의자신문(안 제201조의 2)

- 현행 피의자 의사에 따른 임의적 심문에서 필요적 심문으로 변경
- 구속전 심문조서를 공판조서에 준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

● 체포·구속적부심제도(안 제214조의2)

- 모든 유형의 체포·구속된 자로 대상 확대
- 적부 심사시한을 '48시간 이내'로 한정

● 긴급압수·수색·검증제도 개선(안 제217조)

- 긴급압수·수색·검증 요건에 긴급성 추가
- 긴급압수·수색·검증 시간을 체포 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
-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 압수·수색영장 청구 의무화

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(안 제243조의 2)

-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 허용
- 참여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, 신문 종료 후 의견 진술 가능

● 피의자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(안 제244조의3)

- 피의자의 진술거부권, 변호인 조력권 고지 절차를 상세히 규정

● 수사과정 기록 제도(안 제244조의4)

- 피의자·참고인의 조사장소 도착 시각,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, 그 밖에 수사과정의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 후 편철

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

●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(안 제266조의9)

-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음

1.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
2.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·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
3. 사건의 쟁점을 정리
4.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 요구
5.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
6.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 확인
7.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
8. 증거 채부(採否)의 결정을 하는 행위
9.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 결정
10.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 결정
11.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
12.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

● **집중심리제도의 선언(안 제267조의2, 318조의4)**

-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 매일 계속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회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 다음 공판기일 지정
-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함

● **공판준비절차 종결의 효과(안 제266조의13)**

-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공판기일에 증거신청 불허

● **공판정의 좌석(안 제275조)**

- 검사와 피고인·변호인 좌석은 서로 마주보게 위치(對坐型), 증인 좌석은 법대 정면 위치
- 다만, 피고인은 신문시에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규정

- 구두변론주의 선언(안 제275조의3)
- 피고인신문(안 제296조의 2)
 - 피고인신문 순서를 현행 증거조사 이전에서 이후로 변경
 - 검사, 변호인은 증거조사 후 순차로 신문 가능하나,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가능
- 불출석증인에 대한 제재(안 제151조)
 -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1차적으로 과태료(500만원 이하) 부과하고, 2차적으로 감치처분(7일 이내)

증거법 관련

- 증거재판주의(안 제307조)
 -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의한다는 선언 규정 도입
-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도입(안 제308조의2)
 -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 사용 불허
- 검사 작성 피신조서(피고인 진술 기재)의 증거능력(안 제312조 제1,2항)
 -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으로 '특신상태' 추가
 - 조서의 진정성립 요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외에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증명체제로 전환
-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(안 제312조 제4항)
 - 조서의 진정성립이 원진술자(참고인)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,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 보장 및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능력 인정
-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(안 제314조)

-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부여 예외사유를 사망·질병·외국거주·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명확화

● **조사자 증언제도 도입(안 제316조)**

-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자의 법적 증언을 허용
 - ※ 현행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의 법정 증언 불허

영상녹화물 관련

● **피의자 진술 영상녹화(안 제244조의 2)**

- ‘촬영고지’ 후 영상녹화 가능
- 다만,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의 녹화 필요

● **참고인 진술 영상녹화(안 제221조)**

- 참고인에 대해서도 동의를 조건으로 영상녹화 가능

재정신청 관련

● **재정신청 확대(안 제260조 내지 제262조, 제262조의 2·3, 제265조)**

-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**고소사건으로 제한**(단,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의 경우 현행처럼 고발사건 포함)
- 항고전치주의 도입, 단, 항고후 3월 이내 미결정시 재정신청 가능
-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으로 함 (재정결정기간 : 3개월)
- 재정신청 가능 사건에 대한 재항고 불허
- ‘공소유지 변호사’ 대신 검사가 공소제기 및 유지, 공소취소 불가
- 심리 비공개
- 재정신청시건 기록 원칙적 열람·등사 불허
-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
- 재정신청 기각시 재정신청인 비용 부담 및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 등에 대

한 지급 명령 가능

※ 검찰청법 관련 조항 개정

범죄피해자 보호

- 신뢰관계자의 동석(안 제163조의2, 제221조)
 -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,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함
 - 13세 미만, 장애로 의사 결정력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필요적 동석
-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(안 제165조의2)
 - 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피해자의 경우 비디오 중계방식 또는 차폐장치를 통하여 증인신문
- 공판진행상황의 통지(안 제259조의2)
 - 피해자,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여부, 공판 일시·장소, 재판 결과, 구금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지
- 피해자 법정진술권의 강화(안 제294조의2)
 - 법정진술권의 주체를 피해자 외에 법정대리인, 피해자 사망시 배우자,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확대
 - ‘피해의 정도와 결과,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’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
-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(안 제294조의3)
 -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 보호 또는 신변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심리가능

재판기록 공개

● 재판확정기록의 열람·등사(안 제47조의 2)

- 누구든지 ‘권리구제, 학술연구, 공익적 목적’이 있는 경우 재판기록의 열람·등사 신청 가능
- 다만, 비공개 심리, 국가안보, 사생활 비밀보호, 영업 비밀보호, 소송관계인의 부동의가 있는 경우 열람·등사 제한 가능

기타사항

● 압수물의 사전폐기 확대(안 제130조, 제219조)

- 법령상 소유 등 금지 압수물을 소유자 등 동의 하에 사전폐기
-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폐기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근거 명시

● 압수물의 환가보관의 확대(안 제132조, 제486조)

- 현저한 가치감소 염려, 환부 받을 자가 불상인 경우 환가 보관가능 하도록 환가범위 확대
- 환가보관 사유 중 ‘보관하기 불편한’을 ‘보관하기 어려운’으로 수정

● 열람·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(안 제266조의16)

-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·등사한 서류는 당해 사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
-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●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(안 제277조)

- ①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,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 명백,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·금고, 500만원 초과 벌금·구류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 출석의무면제

- 상소권 회복 청구시 임의적 집행정지(안 제348조)
 - 상소권 회복청구시 재판 집행을 ‘필요적’이 아닌 ‘임의적’으로 정지
- 상고심에서의 참고인 진술(안 제390조)
 - 참고인(전문가 등)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근거 규정 마련
- 재산형 집행의 효율성 제고(안 제477조)
 -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형(벌금, 추징) 집행 가능
 -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근거 규정 신설

시행 시기

- 2008. 1. 1. 시행 (안 부칙 제1조)